

의안번호	2216805
의 퇴 인	여기구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5.
추 계 번호	26B0888

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·농촌디자인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6,000만원(연평균 3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농업·농촌디자인 지원시책 수립 (안 제44조의2)	160	—	—	—	—	160	32

주: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수행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9의2. “농업·농촌디자인”이란 농업·농촌의 공간, 농수산물·식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미적·기능적·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농업인,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·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, 농촌마을디자인·농업용시설디자인·도시농업공간디자인·농업기계디자인 등을 포함한다.<신설>	의무규정
2	안 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)	제1항에 따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제3항) 7. 농업·농촌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<신설>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44조의2(농업·농촌디자인 지원시책의 수립·추진 등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·농촌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보급·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,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정의)		—	• 미대상: 정의 규정
2	안 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)		—	• 미대상: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다양한 시책이 포함된 종합대책으로 농업·농촌디자인 관련 사항이 포함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44조의2(농업·농촌디자인 지원시책의 수립·추진 등) 신설	제1항	○	• 유사사례 참고
		제2항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책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,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농업·농촌디자인 지원시책의 수립(안 제44조의2제1항 신설)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·농촌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보급·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원시책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·농촌디자인 지원시책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6,000만원(연평균 3,200만원)으로 추계됨
 - － 농림축산식품부는 「2023~2027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」¹⁾ 수립시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6,000만원 편성
 - － 개정안에 따른 농업·농촌디자인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계 기간 중 첫째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유사사례	수립비용	비고
「2023~2027년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」	160	• 5년 단위 법정계획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농업·농촌디자인 지원시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농업·농촌디자인 지원 시책 수립	160	—	—	—	—	160	32

주: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수행 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)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·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.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